



‘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’

강 원 지 방 우 정 청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6급이하 공무원 연고지 전보기준 변경

1. 관련

- 가. 강원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조(연고지전보)
- 나. 인력계획과-5936(2015.12.02., 2015년 인사혁신 추진계획 통보)
- 다. 인력계획과-1277(2016.03.09., 6급이하 공무원 연고지 전보기준 개선)

2. 6급이하 공무원 연고지 전보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니 참고하시 바랍니다.

가. 변경 사유

- 1) 연고지 전보 예외적용 기준의 일부 문제점 개선
- 2) 계획인사교류 직원에 대한 비연고지 반영기준 추가

나. 변경 내용

1) 개선사항

구 분	개선 전	개선 후
연고지 전보 예외 적용에 관한 사항	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및 총괄국장의 전보 제외 요청자는 연고지 전보를 보류	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음

- 2) 추가사항 : 계획인사 교류직원 중 보직대기자는 파견기간을 보직발령 후 최근거리 1권역(100km 이내) 비연고지 근무 포인트로 인정

다. 시행일자 : 2016. 6. 1자.

붙임 6급이하 공무원 연고지 전보기준 1부. 끝.

강원지방우정청장



수신자 자청 각 과실, 총(1-19), 우정노조강원지방본부위원장, 공무원노조강원지역본부장

주무관

최병철

인력계획과장

함기철

사업자원국장

홍순희

청장

05/18
김태의

협조자

시행 인력계획과-2367 (2016.05.18.) 접수 ()

☎ 26485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(단구동, 강원지방우정청) / <http://gangwon.koreapost.go.kr>
전화 [033\) 749-2042](tel:033-749-2042) / 전송 033)730-9605 / 071017235@koreapost.go.kr / 공개